

중대재해
사례

4

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짐



재 해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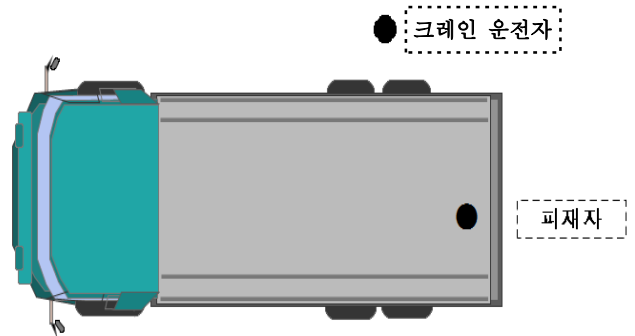
2017.05.06.(토) 07:29경 ○○시 소재 플라스틱 압출 공장에서 폴리프로필렌 톤백을 화물차에 적재하던 중 천장크레인으로 운반되던 톤백에 부딪히며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병원 후송 후 치료 중 2017.05.08.(월) 12:40경 사망한 재해임



사 고 사 진



[사진1] 재해발생 상황



[사진2] 재해당시 작업자 위치



재 해 발 생 상 황

● 작업현장 상황

- 작업장 내부에 진입한 7.5톤 화물차에 3톤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폴리프로필렌 펠렛 약 600kg이 담긴 톤백을 적재함에 1단 적재한 후 재해자가 1단 적재물 위에 올라가 2단 적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열을 적재하던 중 동료 작업자에 의해 천장크레인으로 이송중이던 톤백에 부딪히며 약 2.4m(적재함 높이 1.2m + 톤백 높이 1.2m)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짐

● 재해자의 행동상황

-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차 적재함의 1단 적재물 위에서 크레인 운전자에게 수신호 및 줄걸이를 푸는 작업을 수행하던 재해자가 수신호를 하면서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순간 톤백에 부딪혀 떨어짐



재 해 발 생 원 인

- 떨어짐 방지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장소인 화물차 적재함에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함
- 천장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및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이용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를 하지 않음



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

-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짐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함
- 높이 2m이상인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안전하게 걸어서 작업하여야 함
- 천장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및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이용 작업(화물차 도로주행 제외)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를 하여야 함